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정빈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br>번호 | 808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일

발 의 자 : 송정빈, 김인호, 문병훈, 이동현,  
김호평, 한기영, 오한아, 오현정,  
김재형, 정진술, 김기덕, 홍성룡,  
송아량, 최 선, 권영희, 김경우,  
봉양순, 채유미, 김경영 의원  
(19명)

## 1. 제안 이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 등으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실내 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수준임.

따라서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7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및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준수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를 삭제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관련)

| 오염물질 항목<br>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br>(PM10, $\mu\text{g}/\text{m}^3$ ) | 초미세먼지<br>(PM25, $\mu\text{g}/\text{m}^3$ ) | 이산화탄소<br>(CO <sub>2</sub> , ppm) | 폼알데하이드<br>(HCHO, $\mu\text{g}/\text{m}^3$ ) | 총부유세균<br>(CFU/m <sup>3</sup> ) | 일산화탄소<br>(CO, ppm) |
|--|---|--|----------------------------------|---|--------------------------------|--------------------|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 100<br>이하                                 | 50<br>이하                                   | 1,000<br>이하                      | 100<br>이하                                   | -                              | 9<br>이하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br>대합실, 철도역사의<br>대합실, 공항시설 중<br>여객터미널, 도서관<br>박물관 및 미술관,<br>장례식장 및 찜질방,<br>대규모점포 | 100<br>이하                                 | 50<br>이하                                   | 1,000<br>이하                      | 100<br>이하                                   | -                              | 9<br>이하            |
| 의료기관, 어린이집,<br>노인요양시설,<br>산후조리원  | 75<br>이하                                  | 35<br>이하                                   | 900<br>이하                        | 80<br>이하                                    | 800<br>이하                      | 9<br>이하            |
| 실내주차장  | 180<br>이하                                 | -  | 1,000<br>이하                      | 100<br>이하                                   | -                              | 20<br>이하           |
| 실내 체육시설, 실내<br>공연장, 업무시설, 둘<br>이상의 용도에 사용<br>되는 건축물  | 200<br>이하                                 | -  | -                                | -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mu\text{g}/\text{m}^3$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